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층의 국가전문자격 취득 응시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연령을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18세로 완화하는 한편, 20대 미만 화물차를 보유한 일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일부 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부 양도 후 2년간 양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소속 위·수탁차주에 한해서 일부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00. ~ 9. 00.) 진행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해당없음(국무조정실, '25. 7. 29)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호 중 “20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23조제4항제2호 중 “양수한”을 “양수한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8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

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, 허가기준대수 미만을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 · 운전경력 등의 요건) 법 제8 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 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 자(이하 “화물자동 차 운전자”라 한다)의 연령·운 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 1. (생략) 2. <u>20세</u> 이상일 것 3. (생략)	제18조(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 · 운전경력 등의 요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18세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사업의 양도·양수 신고 등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 도·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. 다만, 제6 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 야 한다. 1. (생략) 2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<u>양수</u>	제23조(사업의 양도·양수 신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양수</u>

<u>한 자</u>: 양도·양수신고일 ⑤ (생략)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삭제 2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⑦ (생략) <u><신설></u>	<u>한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---</u>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제8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</u>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제3항에도 불구하고, 허가기준대수 미만을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.</u>
---	---